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123회 定例學術發表會 및 제10회 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

주관: 한국법사학회

◇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13시 30분 ~ 18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 (13:30 - 13:50)

개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전원 교수)

제 1 부

사회: 문준영(연구이사,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1주제: 대명률에서 친족간 범죄의 형벌 차등 (14:00 - 14:55)

발표 : 김영석 (서울대 강사)

제2주제: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D.34.4를 중심으로-(14:55~15:50)

발표 : 이상훈 (서울시립대 강사)

제3주제: 戰前 일본민사소송법 立法史에 관한 小論 (16:00 - 16:55)

발표 : 김백경 (서울대 박사과정)

제 2 부 영산학술상 시상식(17:00~18:00)

이동 및 만찬 (18:30-) 소담마루 소실

2. 제10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5시에는 제9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 이하의 학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 2013년, 2016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2년, 2015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 2013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4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 2015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시상하였다. 이번 제10회 한국법사학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는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예년과 달리 신진학술상 1명만을 선정하였다. 수상자, 수상논문, 선정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신진학술상(제20호)

수 상 자: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수상논문: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論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

(고문서연구 제48권, [2016. 2.]

선정이유: 조선시대 국왕이 한 지방[道]을 책임지는 관찰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인 고신뿐만 아니라 교서와 유서를 동시에 내려 주었다. 교서에는 관찰사의 재임기간 동안에 특히 유념해야 할 통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유서에는

반란 제압 등과 관련한 군사적 당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교서와 유서를 세밀히 살펴보면 국왕이 특정인을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어떠한 점에 주목해서 통치를 당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관찰사에게 발급한 교서와 유서 등을 기본 자료로 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관찬사료뿐만 아니라 대전회통이나 은대편고와 같은 법전류 및 관찬사로 제입 중에 기록한 개인의 일기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문서행정과 운용 과정을 규명하였다.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실태를 규명할 수 있는 문서학적 계기를 제공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서 제진단자 초본 등 현존하는 여러 사료 심지어는 풍속화 등 그림 자료까지 망라해서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국왕 문서의 작성과 수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신진상 후보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제정해 주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한국법사학회 한상돈 회장님과 한국법사학회 관련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문서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병호 선생님께서는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고문서의 연구 방법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전경목 선생님께서는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고문서의 연구 방법론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앞에서 문서사적인 측면과 왕명 문서에 대한 연구의 길을 선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번 수상 논문인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論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석사·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국왕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왕 문서와 아울러 중앙 및 지방 아문에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중심으로 각종 제도 및 문서 행정 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신진학술상을 계기로 한국 고문서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해외학자 초청 좌담회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6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일본 明治大學의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사가와 교수는 식민지법제를 연구해 왔으며, 좌담회는 그의 최근 연구성과인 '3.1독립운동 판결'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4. 기타

1) 회원동정

- ① 김영석(제2총무이사)이 3월 12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 시험연구사업단 소속 연구위원이 되었습니다.
- ② 우리 학회의 이정선 회원이 2018년 3월 1일부터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 법사학회 사이트 활용안내

한국법사학회 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법사학회의 각종 소식, 법사학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정이나 법사학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법제사 관련된 링크는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 관련된 링크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제보로 링크를 확충해 나가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운영위원회

회장	한상돈(아주대)
명예회장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부회장	김창룡(경북대), 정궁식(서울대), 이재룡(충북대)
고문	서민(충남대 명예교수), 최종고(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전남대 명예교수, 바티칸 대사), 최병조(서울대), 심희기(연세대)
기획이사	이종길(동아대)
감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총무이사	조지만(아주대), 김영석(아주대 법학연구소)
법제이사	김영희(연세대)
연구이사	서울오(이화여대), 문준영(부산대)
정보이사	성중모(서울시립대), 김대홍(울산과학대)
편집이사	박세민(경북대)
섭외이사	한승수(중앙대)
편집위원	김창룡(편집위원장), 임대회(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조지만(아주대), 문준영(부산대), 박세민(경북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종철(Tübingen Uni.)

4.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632-20-242388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會則

(1973. 3. 3 제정, 2016. 10. 15. 최종 개정)

제1조 【名稱】 본회는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라고 한다.

제2조 【事務所】 본회의 事務所는 會長의 研究室에 둔다.

제3조 【目的】 본회는 法史學(韓國法史, 西洋法史, 東洋法史, 로마법, 敎會法, 法思想史) 研究 및 研究者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韓國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 【事業】 본회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研究發表會 및 講演會의 開催
2. 研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其他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한 事業

제5조 【會員의 資格】 본회의 會員은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자로 한다.

제6조 【會員의 種類】 본회의 회원은 다음 二種으로 한다.

1. 會 員
2. 名譽會員

제7조 【會員의 加入】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申請을 하고 이사회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며 本會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總會의 推薦을 얻어야 한다.

제8조 【會員의 權利義務】 會員은 學會의 總會 및 각종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會則遵守,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의 履行 및
 理事會가 定하는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제9조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인
2. 副 會 長 약간인(2016.10.15. 개정)
3. 名譽會長 약간인
4. 顧 問 약간인
5. 理 事 30인 이내
6. 監 事 2인
7. 幹 事 약간인

제10조 【任員의 選出】 ① 名譽會長, 顧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會長과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며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理事와 幹事は 會長이 任命한다.

④ 理事와 幹事の 업무분장은 會長이 한다.

제11조 【任員의 任期】 會長을 비롯한 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二年으로 하
 며 重任할 수 있다.

제12조 【任員 및 理事會】 ①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며 本會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의 效果적인 運營을 위하여 理事 中에서 總務, 編輯, 研究,

法制, 情報, 涉外, 企劃, 國際, 弘報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幹事는 總務幹事, 編輯幹事, 情報幹事 약간 명을 둔다.

④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의 諮問에 응하며, 本會의 各級會議에 參席·發言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에 관한 사항, 總會가 委任한 사항, 會則을 施行하기 위한 規定의 制·改定, 各 分科委員會의 조직 기타 會長이 提案한 學會 運營에 관한 제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제12조의1 【分科】 研究分科는 本會의 研究組織으로서 韓國法史研究會, 로마法研究會 등을 둔다.(2016.10.15. 신설)

제13조 【總會】 總會는 每年 적어도 1회이상 開催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定에 관한 사항
2. 會長과 副會長의 認准
3. 會計監査結果의 承認

제14조 【總會의 議決】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한다.

제15조 【會計年度 및 監事】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일부터 翌年 2月 末日로 한다.

② 監事는 會計年度 終了後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제16조 【會員의 懲戒】 ① 學會의 發展을 沮害하거나 名譽를 손상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長이 위촉하는 懲戒委員會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懲戒는 除名, 會員 資格의 停止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

제17조 【學術賞】 ① 本會의 學術研究를 獎勵하기 위하여 學會에 學術賞 制度를 둘 수 있다.

② 學術賞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8조 【編輯委員會】 ① 本會에 學會誌의 編輯·刊行을 위하여 學會誌 編輯委員會를 둔다.

②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으로 構成하며, 學會誌에 掲載하고자 하는 論文 審査 및 編輯과 刊行에 관한 전반적인 事業을 管掌한다.

③ 委員會의 構成과 事業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9조 【研究倫理規定】 研究倫理 등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韓國法史 學會 研究倫理規定’을 두어 정한다.

제20조 【會則改正】 本 會則의 改正은 出席會員의 三分之二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準則】 本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學術團體慣例에 따른다.

附 則 本會則은 1973년 3월 3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0년 6월 29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1년 7월 5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7년 5월 3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3년 7월 4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7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

부 칙 本회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本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韓國法史學會 研究倫理 規程

2007. 9. 29 제정, 2007. 10.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회칙 및 간행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法史學研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新稿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 ② 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

- ① 투고논문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

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 ① 누구든지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전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5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4. 해당 논문 필자가 학회 회원인 경우 회장에게 해당 회원의 징계

를 건의한다.

제6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7장 이의절차

제19조(이의의 제기)

- ① 투고자, 게재자 또는 신청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이의제기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회장은 전조의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체적인 이의절차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규정의 개정 등

제23조(규정의 개정)

- ①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② 규정의 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항의 의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7. 9.29)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2008. 10. 25 제정 · 시행)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法史學會(이하 “學會”라고 한다)에서 授與하는 瀛山 法史學 學術賞(이하 “이 賞”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趣旨) 이 賞은 法史學 및 古文書 研究者들의 진지하고 創意的인 研究를 독려함으로써 法史學 및 古文書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趣旨로 한다.

제3조 (名稱 및 種類) 이 賞은 “瀛山 法史學 優秀學術賞(이하 “優秀賞”이라고 한다)” 및 “瀛山 法史學 新進學術賞(이하 “新進賞”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 (基金)

- ① 이 賞의 財源은 瀛山 朴秉濠 先生이 出捐한 基金으로 한다.
- ② 學會 會員 등은 위 基金과 별도의 基金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賞과 名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對象)

- ① 優秀賞은 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의 論文으로 한다.
- ② 新進賞은 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으로 만 40세 이하 또는 博士學位 取得日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의 論文으로 한다.

제6조 (審査委員會)

- ① 이 賞의 運營을 위하여 學會 내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 ② 審査委員會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③ 學會長과 總務理事 및 研究理事 1인은 當然職 審査委員이 되며 審

査委員長은 學會長이 名譽會長 중에서 推戴한다.

- ④ 學會長은 古文書研究者 1명을 포함하여 다른 審査委員을 그 해 6월 까지 委囑한다.
- ⑤ 審査委員長은 施賞 3개월 이전에 審査委員會를 召集한다.
- ⑥ 審査委員長이 有故일 때에는 審査委員 중 最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 ⑦ 審査委員會에서의 決議는 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 ⑧ 審査委員의 任期는 그 해 年末까지로 한다.
- ⑨ 審査委員의 名單은 公開하지 아니 한다.
- ⑩ 審査委員에게는 學會의 決定으로 소정의 活動費를 支給할 수 있다.

제7조 (受賞者の 決定)

- ① 優秀賞은 隔年으로, 新進賞은 매년 論文執筆者에게 授與하며, 受賞者는 그 해 11월말까지 決定한다.
- ② 審査委員會는 前前年度 1월 1일부터 前年度 12월 31일까지 國內의 學術誌에 발표된 法史學 및 古文書 관련 論文 중에서 學術적으로 가장 優秀한 論文을 集필한 研究者를 受賞者로 결정한다. 단 學位論文 및 이를 修正·補完한 論文은 對象이 되지 못한다.
- ③ 學會의 會員과 審査委員은 每年 8월말까지 審査委員長 및 研究理事에게 對象論文을 2편까지 소정의 樣式에 따라 推薦할 수 있다.
- ④ 受賞者는 제3항의 節次에 의해 推薦된 論文에 대하여 審査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選定한다.
- ⑤ 제4항의 要件을 충족한 論文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受賞者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⑥ 審査委員會의 議事 및 審査經過는 公開하지 아니 한다.

제8조 (施賞 및 副賞)

- ① 審査委員會에서 受賞者가 決定되면 審査委員長은 적절한 방법으로 受賞者에게 受賞事實과 施賞方式을 通知하며, 그 해의 마지막 定例 學術大會에서 施賞式을 開催한다.

② 受賞者에게는 賞牌를 授與하며, 副賞으로 賞金을 授與할 수 있다.

賞金の 額數는 審査委員會에서 基金出捐者와 協議하여 決定한다.

제9조 (改正) 이 規程은 審査委員會의 發議로 學會 總會에서 改正한다.

제10조 (補則) 이 規程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學會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거나 一般慣例에 따른다.

부 칙 (2008.10.25)

이 規程은 2008년 10월 25일부터 施行한다.

法史學研究 刊行規程

(1999. 7. 19 제정, 2007. 6. 1 전문개정, 2017. 4. 29 최종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 K.S.L.H. ; 이하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法史學研究(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 K.J.L.H. ; 이하 ‘학회지’로 줄임)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간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고자격】**

-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 **【원고】**

-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기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기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7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장은 편집위원 선임 및 편집위원장 위촉이 있는 후 열리는 이사회

에 그 선임 및 위촉 사실을 보고하고 각각의 선임 및 위촉에 대하여 이사회에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논문 등의 투고지침, 심사지침 등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 3.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 4.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 5.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7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8조 【투고원고의 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 2. 한국 법사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가질 것
 - 3. 기타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 ②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심사등급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없음”으로 나눈다.(2008. 9. 1. 개정)

- ③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하여 “게재”, “게재하지 않음”으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제9조 【학회지의 발간일】 학회의 정기 학회지인 “법사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제10조 【학회지의 배포와 기증】

-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 ② 전항의 배포본 이외에 논문 등의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하며, 10부 이상의 별쇄본은 제작 실비를 게재자가 부담한다.(2017. 4. 29. 개정)

제11조 【논문 등의 게재비】

- ① 논문 등의 게재자는 게재비 규칙에 따라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 등의 게재비의 기준에 대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12조 【저작권 등】

-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13조 【학회지의 전자출판】

- ① 학회는 서적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
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19.)

이 개정 규정은 제20호 발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에는
법사학연구 제20호를 발간한다.

부 칙 (2007.6.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시행한다.

法史學研究 投稿 및 審査指針

(2007. 6. 1 제정, 2008. 5. 1, 2008. 9. 1.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法史學研究 刊行規程 제7조 제6항 및 제9조에 규정된 “法史學研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원고모집 및 투고, 투고원고의 작성방법,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고자격】

-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원고】

-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 【투고원고의 작성방법】

- ① 투고지는 이 지침 및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투고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국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과 주제어를 붙여야 한다.
- ③ 원고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초록을 붙여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큰 외국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을 국한문으

로 번역한 원고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목적상 기준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원고모집의 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 ② 원고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투고절차, 원고 집필 요령, 심사기준 및 절차, 학회 윤리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원고의 제출 및 접수】

- ①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상반기 2월말, 하반기 8월말) 내에 학회의 편집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를 전자매체기록장치(플로피디스켓, CD-Rom, 기타 외부저장장치)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 ③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④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원고 집필 요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투고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투고원고를 심사한다.
 - 1. 논문 : 주제설정의 창의성, 주제설정의 적실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기존참고자료의 조사 및 반영여부, 원고 집필 요령의 준수여부
 - 2. 번역 :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 3. 자료 및 그 해설 : 자료의 학술적·사료적 가치, 자료소개의 필요성, 해설의 학술적 완성도, 해설의 학문적 기여도
 -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③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위원은 총평과 함께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의견을 낸다.(2008. 9. 1. 개정)

제9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편집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1. “수정 후 게재”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2008. 9. 1. 개정)
 2. “수정후 재심사”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3.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4. 심사위원중 1인이라도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의견을 낸 경우, 편집회의의 심사판정에 회부한다.(2008. 9. 1. 개정)
 5.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판정을 내린다.(2008. 9. 1. 개정)
- ④ “수정후 게재” 판정에 따라 수정된 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
 - 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한 때에는 그 결과와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하여 1주일 이상의 수정기간을 부여한 후, 수정된 원고를 제출받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 ⑥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회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10조 【심사결과와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 ②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2008. 9. 1. 개정)
-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1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는 투고일자, 심사개시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2008. 5. 1. 신설)

제12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게재료 납부】 학회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등의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하는 게재비규칙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투고자격의 제한】

-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7. 6. 1)

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掲載費 規則

(1999. 7. 19 제정, 2017. 4. 29 최종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法史學研究刊行規定 제9조에 의한 논문 등의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도】 게재비는 법사학연구의 간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고자는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의 발표
2. 조판 쪽수가 목차, 외국어 초록 등을 포함하여 40쪽이 초과한 논문
3.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

제4조 【게재비】 게재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41~45쪽 : 10만원
 2. 46~50쪽 : 20만원
 3. 51쪽 이상 : 30만원
- 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전임교수 및 실무가는 30만원, 그 외의 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규칙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1999. 7. 1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20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2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적용한다.

원고 집필 요령

I. 원고 집필 요령

1. 모든 원고에는 맨 처음에 제목과 필자를 기재하며,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이메일주소를 필자명에 붙인 각주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2. 장절항목의 번호는 I. II. III. → 1. 2. 3. → 1), 2), 3) → (1), (2), (3)의 순서로 표기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I. 등의 번호를 붙인다.
3. 필자명 다음에 장(I. II. III.)과 절(1. 2. 3.)의 목차를 기재한다.

예)

목 차
I. 머리말
II.
1.
2.
III.
1.
2.
IV. 맺음말

4. 목차 다음에 [국문요약]과 [주제어]를 기재한다.
 - 1) [국문요약]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전후로 한다.
 - 2) [주제어]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주제어] 다음에 본문을 기재한다.
 - 1)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동양어는 한자로 표기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3) 서양어 및 한자 이외의 동양어는 번역하여 사용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4) 인용할 때에는 “ ”를,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 5) 긴 문단을 인용할 때에는, 문단의 전후에 1행을 띄우고 좌우 들여쓰기를 하여 인용할 수 있다.
6.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7.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의 [Abstract]와 [Key Words]를 기재한다.
- 1) [Abstract]의 분량은 400 단어 전후로 한다.
 - 2) [Key Words]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기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II. 문헌 인용 방법

* 모든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문헌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동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단, 국내서는 출판지를 생략한다)

예: 朴秉濠,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 1996), 100면.

(2) 반복되는 경우: 저자, 앞의 책, 면수.

예: 朴秉濠, 앞의 책, 110면.

-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저자, 위의 책, 면수.
예 : 朴秉濠, 위의 책, 110면.
- (4) 동일 저자의 여러 책 중 반복되는 경우 : 저자, 앞의 책(각주 **), 면수.
예 : 朴秉濠, 앞의 책(각주 10), 110면.

2) 논문

- (1)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예 :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 『亞細亞研究』 12-1(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49면.
- (2)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 50면.
-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필자, 위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위의 글, 50면.
- (4) 동일 저자의 여러 논문 중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각주 **),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각주 10), 50면.

- 3) 사료의 경우에는 필자가 특정하기 위해 “《 》”, “〈 〉”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서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 (1) 저자, 서명(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Paul Brand, *The Origins of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London : Blackwell, 1992), p.100.

(2)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2) 논문

(1) 필자, “논문명”, 게재지명(발행처, 발행연도), 면수(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Richardson, J. S., “Lex Calpurnia de repetundis”, *Journal of Roman Studies* 77(1987), pp.1-12

(2) 게재지 명칭의 약칭은 각국의 관례에 따르되,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 면수는 각국의 인용예에 따라 p., S. 등을 사용한다.

(4)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a.a.O.*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編輯委員]

편집위원장 김창록

편집위원 박세민

문준영

성중모

안종철

이영록

이재룡

임대회

임상혁

조지만

Marie Seong-Hak Kim

편집간사 이원규

法史學研究 第 57 號 값 42,000원

인쇄일: 2018년 4월 30일

발행일: 2018년 4월 30일

편저자: 한국법사학회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돈 교수 연구실

전화 (031) 219-1667

전송 (031) 219-1619

발행인: 홍기원

발행처: 도서출판 민속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37-25

전화 (02)804-3320, (02)805-3320, (02)806-3320

팩스 (02)802-3346